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09
----------	------

발의연월일 : 2017. 2. 21.

발의자 : 박찬우 · 이명수 · 김성찬
정성호 · 노웅래 · 김용태
이우현 · 이은권 · 홍문표
정태옥 · 김태흠 · 조배숙
박명재 · 이채익 · 유민봉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는 항공 또는 선박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철도안전을 위해 철도종사자의 복무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최근 항공종사자의 음주위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철도차량에 탑승하여 여객 등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철도종사자 중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및 여객승무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음주 및 약물을 복용하고 철도차량에 탑승하여 여객 등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도운영자가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도차량 내에서 술의 판매 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안 제47조제6호, 제50조의2 신설, 안 제78조제2항 제3호의3 및 같은 조 제5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0. 03페센트”를 “0. 02페센트(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철도종사자는 0. 03페센트)”로 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승무원
4.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4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제5장에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술 판매의 금지) 철도운영자는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 내에서 술의 판매 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제78조제2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3.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7조제5호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자

2. 제47조제6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제81조제1항제11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u>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실무 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p> <p>-----</p> <p>-----</p> <p>-----</p> <p>-----</p> <p>-----</p> <p>-----.</p>
<신 설>	<u>1. 운전업무종사자</u>
<신 설>	<u>2. 관제업무종사자</u>
<신 설>	<u>3. 여객승무원</u>
<신 설>	<u>4.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u>
	<u>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u>
<신 설>	<u>5.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u>
	<u>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u>
	<u>행하는 사람</u>
<신 설>	<u>6.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u>

	<u>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③ ----- ----- ----- ----- -----.
1. 술: 혈중 알코올농도가 <u>0. 03퍼센트</u> 이상인 경우	1. ----- <u>0. 02퍼센트</u>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철도종사자는 <u>0. 03퍼센트</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 -----.
1. ~ 5. (생 략) <u><신 설></u>	1. ~ 5. (현행과 같음) <u>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u>
6. (생 략) <u><신 설></u>	<u>7. (현행 제6호와 같음)</u> 제50조의2(술 판매의 금지) 철도운영자는 음주로 인하여 소란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

제78조(별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의2. (생 략)

<신 설>

4. ~ 6.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3. (생 략)

1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15. ~ 18. (생 략)

④ (생 략)

⑤ 제47조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 내에서 술의 판매 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제78조(별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4. ~ 6. (현행과 같음)

③ -----

-----.

1. ~ 13. (현행과 같음)

<삭 제>

15. ~ 1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7조제5호를 위반하여 철

	<p><u>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자</u></p> <p><u>2. 제47조제6호를 위반하여 술 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u></p>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1조(과태료) ①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47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u>제6호</u> 를 위반하여 여객 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 람	11. ----- ---- <u>제7호</u> ----- -----
12. ~ 18. (생 략) ② ~ ⑤ (생 략)	12. ~ 1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